



건설공사의 노무비율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89호, 2024. 12. 30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고용보험기획과), 044-202-7358

I. 건설공사의 노무비율

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 건설공사: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
2. 하도급 공사: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